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092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474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092294 판결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6. 7.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7,176,4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76,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76,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2011. 6. 15. 위 은행이 2003. 9. 26. E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던 C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받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12. ‘C은 원고에게 9,633,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646935), 위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10.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와 자녀인 H, I, J, C, K, L, 피고가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7.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 11. 28. 접수 제6255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춘천시, 춘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지분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M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건물 P호를 임차하여 'Q'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은행계좌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 7. 10. C의 은행계좌 잔액은 1,9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17, 19, 21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3. 9. 6. M의 대리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R건물 P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인 S, 임차인 M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차장소에서 M을 사업자로 하여 2013. 12. 11.부터 2017. 3. 31.까지 음식점 운영이 이루어졌던 사실, 2017. 3. 10.부터 2017. 4. 6. 사이에 위 상가의 임대인인 S로부터 M의 계좌로 총 29,205,05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제 채권자가 M이 아닌 C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피고가 망인을 모시고 살면서 망인의 사망시까지 상당한 부양료를 지출하였는바, 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 실질이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그 주체, 방식, 내용, 성질 및 효력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피고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같다는 점만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관계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T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29.까지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27,176,432원[= 9,633,757 + (9,633,757 × 15% × 4,431/365), 원 미만 버림]이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522,6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상속지분 2/1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61,487,058원이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27,176,432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소정의 방법으로 기여분이 산정된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7,176,4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일부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7,176,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지현

별 지 목 록

[토지]

1. 강원도 춘천시		대 124m'
2. 강원도 춘천시		대 1274m'
3. 강원도 춘천시		대 314m'
4. 강원도 춘천시		대 177m'
5. 강원도 춘천시		임야 1519m'
6. 강원도 춘천시		임야 64m'

[건물]

강원도 춘천시 , , ,

[도로명주소]

강원도 춘천시

벽돌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및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217.95m'

2층 73.08m'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및

기타지붕 단층 창고 18m'

